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1가단10475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1. 9. 2.

판 결 선 고 2021. 9. 16.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864,332원 및 그 중 원금 2,510,802원에 대하여 2020.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20. 6. 2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소209218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5. 3. 17. 피고 B에 대하여 원고에게 5,109,673원 및 그 중 2,499,461원에 대하여 2014.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5. 4. 9.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을 '제1대출채권'이라 한다).

나. D 주식회사는 2011. 6. 7. 피고 B에게 15,000,000원을 변제일을 2016. 6. 6.로, 대출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각 연 44%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다(이하 '제2대출채권'이라 한다). 그 후 피고 B은 위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D 주식회사는 2015. 5. 18. E 유한회사에 제2대출채권을 양도하였고, E 유한회사는 D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2015. 6. 2.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9. 12. 13. E 주식회사로부터 제2대출채권을 양수받았고, 2020. 1. 15. E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피고 B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제2대출채권의 2020. 10. 13. 기준 원리금 잔액은 11,864,332원(= 원금 2,510,802원 + 이자 및 지연이자 9,353,530원)이다.

라. 피고 B의 아버지인 F는 2020. 6. 29.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C(상속지분 3/9)와 자녀인 G, H, 피고 B(각 상속지분 2/9)이 있다.

마.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은 2020. 6. 29.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피고 C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바. 피고 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앞서 본 대출채무를 포함한 여러 건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I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양수금청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제2대출채권 원리금 11,864,332원 및 그 중 원금 2,510,802원에 대하여 2020.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제1, 2대출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제1, 2대출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제1항 기재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의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 중 피고 B의 상속지분인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은 이로써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망인이 생전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피고 C에게 상속해 주기로 자녀들에게 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은 또, 원고에 대한 채무자인 피고 B이 상속을 포기한 행위는 채무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야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상속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고,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 중 피고 B의 상속지분인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2020. 6. 29.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 중 피고 B의 상속지분인 2/9 지분에 해당하는 1/9 지분($= 1/2 \times 2/9$)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훈

별지

목 록

1. 부산광역시 동래구 [] 대 221.6㎡

2. 부산광역시 동래구 []

[도로명주소]부산광역시 동래구 []

벽돌조적조 슬라브지붕 3층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1층 10.98㎡, 2층 99.2㎡, 3층 84.9㎡ 끝.

